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63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이원택・안호영・송옥주

문대림 • 임호선 • 이병진

임미애 • 주철현 • 유준병

문금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을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함)을 졸업 하여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학사 학위를 받 을 예정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하고 있음.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이래로 그동안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맞춰 수의사 국가시험도 의사·치과의사·

한의사·간호사의 국가시험의 경우와 같이 그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보다 강화함으로써 수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수의사 인력이 양성·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전문 자격제도 간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수의사 인력을 배출하고 수의사 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제9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수의학을"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학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응시자격) ① 수의사 국가	제9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u>수의학을</u> 전공하는 대학(수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
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	은 수의학을
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수의학사 학위를	
받을 사람을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